

영등포구의회  
제186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 
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5. 3. 5

行 政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』 檢 討 報 告 書

## 1. 경 과

의안 제43호로 2015년 2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2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 2. 제안이유

「담배사업법」 및 「담배사업법 시행규칙」 따라 제정된 조례 내용 중 경쟁 제한적 내용이나 자의적인 내용이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상위법령인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인용조항 정정(안 제1조)
- 나.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정의가 경쟁 제한적 규제에 해당되므로 이 부분 삭제(안 제3조제2호)
- 다. 협약의 취소 사유 중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 삭제(안 제8조제1항제2호)

## 4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담배사업법
- 담배사업법시행령

### 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「담배사업법」(이하 ‘법’) 및 「담배사업법시행규칙」(이하 ‘규칙’)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중 경쟁 제한적인 불평등한 조문 및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 - 안 제3조제2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“기관 또는 단체”를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정하는 부분이 2014.9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로 선정되어 본 조문을 삭제하는 것이며,
  - 안 제8조제1항제2호는 협약의 취소 사유 중 “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”는 자의적으로 해석

될 수 있는 조문이므로 삭제

- 금번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인용 조항을 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불필요한 규제와 자의적인 해석이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으로
-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자에 대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를 명시하여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항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
- 또한, 협약 취소 사유 중 불확실하고 주관적인 의견이 개입될 수 있는 조문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처리에 역행하므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기관 또는 단체 선정시 투명하고 객관적인 선정 기준이 강구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 참 고 자 료

## 1 담배사업법

**제16조(소매인의 지정)** ① 담배소매업(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)을 하려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.

②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한 때에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

가.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·피한정후견인

나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
다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라.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마.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바. 대표자가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

2. 청소년(「청소년 보호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이 담배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 등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장소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

3. 영업소 간의 거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

4.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

③ 소매인의 지정절차,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.

## 2

## 담배사업법 시행규칙

**제7조(소매인의 지정절차 등)**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매인지정신청서에 점포(적법하게 건축된 것을 말한다)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.29.>

1. 삭제 <2014.1.29.>

2. 삭제 <2014.1.29.>

② 제1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,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해당 점포에서 담배소매업만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매인으로 지정된 후 제1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. <신설 2014.1.29.>

1.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2. 국가유공자증명서류,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(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한다)

③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정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 제8항에 따른 재조사 기간, 제7조의2에 따른 공고 후 신청서 접수기간 및 「행정절차법 시행령」 제11조 각 호의 기간 등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0.3.3., 2014.1.29.>

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한 후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. <개정 2010.3.3., 2014.1.29.>

을 4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. 이 경우 소매인지정신청인에게 그

### 3

## 대한민국 헌법

**제11조**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. 누구든지 성별·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·경제적·사회적·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,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.

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,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.